

2026. 03. 03.

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연수 자료

☆(임기) 위원 임기는 1년(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)이며,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
(최대 3년 가능)

☆(위원의 자격)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
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

☆(위원의 정수)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5명으로 하고, 학부모 7명, 교원위원 6명,
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 각각 1명씩 포함.

☆(선출관리위원회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고, 교원위원
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, 위원장은 호선

***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**

☆(학부모위원 선출)

-선출방법 : 직접 투표

-공고 : 2026. 03. 03(화)

-입후보자 등록 : 2026. 03. 04.(수)~03. 06.(금)

-선거공보 : 2026. 03. 09.(월)~03. 13.(금)

-투표 : 2026. 03. 17.(화)

-당선자결정 :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

*정족수 이내 입후보하고 결격사유조회에서 이상이 없을시 무투표당선

☆(교원위원 선출)

-선출방법 : 직접 투표

-공고 : 2026. 03. 03.(화)

**-입후보자 등록 : 2026. 03. 04.(수)~03. 06.(금)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등록(본교
교무실)**

*정족수 이내 입후보시 무투표당선

-투표 : 2026. 03. 13.(금)

-당선자 결정 :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

☆(지역위원 선출)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
무기명투표로 선출

☆(임원)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

☆(사무처리부서) 학교운영위원회 간사가 처리하되, 단위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
담당 주무부서에서 협조

☆(회의 등)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 운영

